

<b>보도 일시</b> (인터넷) 2023. 2. 28.(화) 회의종료시 (지 면) 2023. 2. 28.(화) 회의종료시 ※ 별도 문자 안내 예정	<b>배포 일시</b> 2023. 2. 27.(월) 15:30

## 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
### -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요건 관련 이중 규제 완화 -

#### 주요 내용

-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‘학업성적’ 요건을 삭제하여 이중 규제 완화
- 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2월 28일(화), 국무회의에서 「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안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   -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‘재검토기한 도래 규제\* 검토 전담팀(TF)’에서, ‘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’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
      - \*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기한이 도래한 규제로, 국비유학 응시자의 자격사항은 2022년에 재검토기한(3년 주기) 도래
    - 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\*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‘학업성적’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한다.
      - \* 기존 응시자격 : 대학 이상의 학력(졸업예정자 포함), 이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, 학교 전 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80% 이상
      - 1차 평가항목 : 외국어성적, 국사성적, 학업성적,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, 국외수학계획서
  -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, 기초·전문지식,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.

- 【붙임】 1. 국비유학제도 개요  
 2.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 <규정개정>	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	책임자	과 장	유희승 (044-203-67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윤하 (044-203-6766)
담당 부서 <사업집행>	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국비유학팀	책임자	팀 장 직무대리	이수연 (02-3668-1343)
		담당자	연구사	문덕재 (02-3668-1374)

□ **국비유학제도 개요**

- (목적) 국가 수준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외유학 기회 확대를 위해 '77년부터 국비유학제도 시행\*
- (근거) 교육기본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
- (추진연혁 및 경과)
  - 1977년 사업 시작(주관 : 한국교육과정평가원)
  - 1998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사업 이관
  - 2010년 저소득층 특별전형(수급권자·차상위계층) 시행
  - 2014년 기술·기능인 전형 시행
  - 2018년 저소득층 특별전형 응시자격 확대(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 추가)
  - 2022년 저소득층 특별전형 응시자격 확대(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등록자 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상이 및 장애등급자 추가)
- (규모) 2022년 국비유학생 **61명** 선발('77~'22년 총 2,691명 선발)
  - 일반전형 36명\*, 꿈나래(舊 저소득층 특별지원)전형 16명, 기술기능인 3명, 국비연수 6명
  - \* 지역연구분야 9명, 기초학문연구분야 12명, 혁신성장동력연구분야 15명
- (지원내용) 항공료 실비 및 최대 3년간 장학금\* 지급
  - \* 미국 유학 기준(일반 : \$40,000 / 꿈나래·기술기능인 : \$50,000) / 국가별 상이
- (선발절차) 선발시험 공고 → 1차 서류 심사(2배수 선발) → 2차 면접시험 → 최종합격자 발표
- (평가항목) [1차 서류심사] 외국어성적, 학업성적, 국외수학계획서 등, [2차 면접] 선발분야 기초·전문지식, 책임감, 발전가능성 등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 외 유 학 에 관 한 규 정  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대학 등의 전 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균성적과 관계없이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응시자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1. 11. ~ 12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응시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전 과정(독학자의 경우에는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)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일 것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제1호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같은 항 제2호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1조(응시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